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 기 창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8월 26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8일

3. 제안이유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충청북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안전교육, 운행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교통안전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및 6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안전교육, 운행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안 제8조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8. 11. ~ '20. 8. 2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인천, 울산 등 6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이용의 편리성으로 확대되고 있고, 교통사고 증가로 안전에 대한 위협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및 안전사고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